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2206045)	2024. 11. 29.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조승환의원 (2207247)	2025. 1. 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7. 1.)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박덕흠의원 (2214565)	2025. 11. 26.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서범수의원 (2215024)	2025. 12. 9.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서범수의원 (2215380)	2025. 12. 18.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이건태의원 (2215498)	2025. 12. 22.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3. 24.)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

한 실정임.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정정 신청 등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또한 낮은 수준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나.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을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다.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제5항·제6항)

라. 고용주등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0조제3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 시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고용주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및 제137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차. (생 략) <신 설> 24. ~ 34. (생 략)	제2조(정의) ----------. 1. ~ 22. (현행과 같음) 23.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 시설 24. ~ 34.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제44조의2, 제45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

	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생략) <신 설>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③ ----------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